

17. 여·수신금리 결정체계 및 금리현황

가. 여·수신 상품별 금리 결정체계

- 개인금융부

- ① 각 시중은행의 경쟁상품별 금리를 조사, 분석한다.
- ② 은행내부 목표(적정 Net margin, cost 등)를 감안하여 적용마진을 산출한다.
- ③ 당행 자금부가 매일 업데이트한 시장금리에 전략적으로 설정된 적용마진을 더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 기업금융부

기업여신심사결과 결정된 Credit grade와 시중 Market rates를 고려하여 개별회사별로 결정하며, 기업의 Credit standing의 변화가 있을경우 수시 변동함.

나. 여·수신 상품별 금리 현황

(1) 여신금리

(2012.02.29일현재)

구분			신용등급별1) 현황			비고
			최상위 등급	최다차주 해당등급	최하위 등급	
개인대출	신용대출 (무보증,3년)	등급	A	C	F	
		적용금리	6.74%	11.59%	21.11%	
	아파트담보대출 (최장30년)	등급				
		적용금리	4.48%	5.80%	7.56%	
예금담보대출 (정기예금1년)	등급					
	적용금리	3.47%	3.47%	3.47%		
기업대출2)	기업일반대출 (1년)	등급	3	3	3	
		적용금리	5.405%	5.405%	5.405%	
	당좌대출	등급	3	3	3	
		적용금리	5.140%	5.140%	5.140%	

주: 1)정상등급을 대상으로 함
2)무보증대출 기준

(2) 수신금리

(2012.02.29일현재)

구분	기간	최저금리1)	최고금리2)	비고
보통예금	-	0.1%	0.1%	
저축예금	-	-	-	
정기적금	6개월	해당사항없음		
	1년			
	2년			
	3년			
정기예금	3개월	1.6%	1.9%	
	6개월	1.8%	2.1%	
	1년	2.7%	3.0%	
	2년	자금부와 협의하여 결정		
	3년	자금부와 협의하여 결정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해당사항없음		

주: 1)기본고시금리 기준
2)일반우대금리 기준

18. 준법감시인 제도

당 행 그룹은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직성, 높은 윤리 의식, 공정한 거래, 양질의 서비스, 선량한 관리 의무를 기본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그룹이 영업을 하는 지역에서의 관련 법, 규정, 규칙, 거래관행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CEO나 영업 책임자는 법규위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준법감시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들과 연대하여 적절한 준법감시업무인원, 직원교육,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그룹의 준법감시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진이 준법감시 기능을 통하여 잠재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이 영업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법감시에 대한 경영진의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당해 금융기관 책임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며 직접 보고토록 하며 선임된 준법감시인은 해당 지역 또는 금융기관의 준법감시 책임자에게 준법감시와 관련된 업무들이 보고되도록 한다.
2. 준법감시인과 다음에 대하여 미리 협의한다.
 - 신상품이나 서비스 계획
 - 회사의 구조 또는 경영조직 변경
 - 새로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 및 준법감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3. 준법감시인과 다음에 대하여 즉시 협의한다.
 - 규정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
 - 내외부 감사 보고서에 지적된 규정상의 문제점
 - 고객의 불평 또는 허가 취소된 업무가 직원에 의한 법규 위반으로 고려될 때
 - 기타 준법감시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요구 받거나 그룹의 평판에 영향이 있다고 사료될 시
 - 법규위반등과 관련된 금융감독당국앞 보고사항
4. 준법 감시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준법감시업무 계획을 작성한다.
 - 준법감시 모니터링 계획
 - 준법감시업무관련 각종 지침, 메뉴얼의 적정성 (Compliance Manual, Compliance Chart 등)
 - 준법감시 교육
 - 그룹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검사 결과 검토
 - 그룹 내부 지침과 국내 법, 규정, 및 감독기관 지침의 제·개정 사항을 비즈니스에 반영
 - 신상품이나 서비스 계획 검토 등
5. 당해 금융기관 또는 지역의 총 준법감시 책임자는 준법감시 업무계획을 확인하고 상기 준법감시 계획이 이행되도록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며 각 업무 단위 책임자들이 준법감시인을 협조하도록 한다.
6. 준법감시인은 해당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심각한 미 이행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지역의 준법감시책임자와 상의한다.
7. 당해 금융기관 책임자는 준법감시인에 의해 작성된 반기 준법 감시 확인서에 연대 서명한다.

현재 당행의 법무 및 준법감시부에는 부서 총괄책임자 하에 총 13명의 부서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기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원활이 운영되도록 부서의 역할을 법무업무 및 준법감시 업무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각 부분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제반 경제, 시장 상황, 금융관행, 신상품 제공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법규위반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여 그룹의 준법감시 정책이 적절한 통제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9. 내부통제

1) 감사의 기능과 역할(정기, 특별, 수시감사)

내부통제의 총괄적인 부서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모든 영업활동과 후선부서의 기능을 감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수행합니다.

감사부의 감사는 부서별, 지점별로 이루어지며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발견된 사항 혹은 개선책을 해당업무의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장에게 알려 업무수행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절차의 간소화 등도 추천합니다.

각 지점별/부서별 일반 통제업무 이행여부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며 자체 감사 항목별로 실시합니다.

2) 내부감사부서 검사방침

내부 감사부에서는 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마다 본점 및 국내 관련규정을 적절히 따르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위험노출이나 운영상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검사빈도

감사는 2년 정도의 주기로 업무영역별로 나누어 약 2주간 실시되며 서면으로 통보된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해당업무부서의 최고책임자는 각 부서별로 개선사항을 완결하도록 하고 이를 취합하여 확인서를 보냄으로써 업무에 반영되었음을 본부에 알립니다.

20. 원화유동성비율 위반사실

위반구분	발생월	비율	향후준수계획	약정서체결내용	이행여부	비고
			해당사항없음			

21.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사항

해당사항없음

22. 수시공시 사항

해당사항없음

23. 리스크 관리

1) 리스크 관리 시스템

당행은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업무 특성에 맞게 리스크를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는 리스크관리부, 시장리스크는 자금부,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는 회계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과 견제 및 정기적 보고 절차를 통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행은 한국에서 고려해야 할 모든 분야의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리스크의 적절한 평가 및 통제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의 자산부채관리위원회(Assets and Liabilities Committee)와 더불어 한국리스크관리위원회(Risk Management Committee)를 설립하여 매월 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감독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점장 및 각분야의 최고 책임자(리스크 관리부, 회계부, 자금부, 개인금융부, 기업금융부, HTS (전산/업무지원부) 그리고 법규/준법감시부)이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인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한국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당행이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전반적인 리스크를 Green/Amber/Red 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세부적으로는 회계, 세무 및 자본/유동성 리스크, 국가, 기업 및 금융기관 신용리스크, 개인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법규 준수 리스크, 운영리스크, 평판리스크, 지속성장리스크 등으로 리스크를 분리하여 관련된 현안을 모두 논의한 후, 주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본점 리스크 관리 위원회로 월 1회 집중하여 보고되고 있습니다.

2) 신용리스크 관리

신용리스크란 고객이 은행에 행하기로 약속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의 경우 대출원리금의 미상환위험;
- 지급보증의 경우 보증제공자의 대지급불능위험;
- 외화, 파생상품, 채권거래 등의 경우 거래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불능위험;
- 무역거래의 경우 결제불능위험;
- 역외금융의 경우 통화의 유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위험.

신용리스크는 적절한 담보책정이나 채권서류의 완벽한 구비를 통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본점은 신용리스크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지점이 엄격한 신용승인 체계와 보고과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 여신 심사 절차

당행은 서울지점 여신지침에 의거하여 기업여신을 취급하고 있으며, 서울지점(국가별)의 여신지침은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당행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포함)에 대하여, 본점의 지침하에 바젤 2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23단계로 분류하여 여신한도를 설정, 최소한 연 1회 정기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상 '요주의'이하에 대한 업체의 경우에는 보다 빈번하게 (월별/분기별/반기별) 그 상태를 관찰하여 여신 승인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심사와 별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상당 부분 악화된 경우 비정기적으로 심사하여 본점에 보고합니다. 여신 심사절차 및 기준은 별첨 1과 같습니다.

여신심사절차의 첫번째 단계로, 기업 담당자(RM)는 재무분석 등 정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과 국내의 환경, 심사대상 기업, 산업/시장 동향 및 영업/산업 분석 등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통하여 신용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리스크관리부의 기업여신 심사/승인 담당자는 기업의 재무위험 및 영업위험을 평가하고, 여신의 적정성, 수익성 및 여신 관련 내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RM이 여신심사전산시스템에 정량정보(65%)와 정성정보(35%)를 입력하여 산출한 차주의 신용등급을 확정합니다.

나. 여신 사후 관리 운영

기업담당자는 정상여신에 대하여 매년 정기심사하며, 고위험여신인 경우 소관책임(Ownership)을 기업담당자로부터 리스크관리부 특수여신팀(Special Credit Team)으로 이관하여 관리합니다. 대출승인 이후 대출집행을 위한 제반 절차(약정서 등 서류정구), 한도 관리 및 연체 관리 등의 업무는 업무지원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여신 감리 제도

매월 본점의 CRR (Credit Review and Risk Identification)팀에서 서울지점이 승인한 여신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여신품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점 그룹감사부서(Group Credit Audit)의 감사도 정기 및 수시로 진행되어, 여신의 취급에 대한 전반적인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시장 리스크 관리

시장상황변화에 따른, 금리, 가격, 환율 등의 변화가 보유자산 및 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시장 리스크는 자금부가 종합관리합니다.

지점의 모든 금리 리스크는 당지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기간별, 상품별, 통화별 금리 리스크를 PVBP (Present Value of a Basis Point)로 환산하여 본점에서 승인된 한도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거래장부에 기표되는 모든 파생상품 및 채권 등의 가격 리스크는 매일 매일 시가 평가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본점에서 정한 한도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절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본점으로 보고합니다.

모든 외환거래는 당 지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기간별, 통화별 포지션잔액을 종합하여 한국은행 및 본점으로부터 승인 받은 한도이내에서 관리합니다.

4) 유동성 리스크 관리

유동성 리스크란 자산과 부채의 자금기일이 크게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 했던 자금유출 등에 대응하지 못하여 현저하게 높은 금리로 조달하게 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지점의 유동성 한도는 매월말 주기로 점검하여 적정비율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그 결과는 매월 경영진에게 보고되어 집니다. 또한 본점의 지침에 따른 지점의 유동성 리스크는 매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항상 적정한도 내에서 유지하도록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말 그 결과는 경영진 및 본점으로 매월 보고 되어 집니다.

5) 경영 리스크 관리

지점장의 주재하에 매월 정기적으로 ALCO(Assets and Liabilities Committee)회의를 소집하여 은행전반 및 각 고객군/상품군 경영 리스크를 점검,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동 회의에서는 별도로 준비된 경영진 보고용 자료를 바탕으로 월별 손익분석과 함께 자산과 부채의 운용에 따른 신용 리스크 현황, 시장 리스크 현황, 유동성리스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보완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6) 기타 리스크 관리

a. 법규상 준수 리스크

준법감시부에서는 은행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법, 규정 등을 모은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지침(Compliance Chart)을 토대로 6개월에 한번씩 각 부서로부터 법규 준수 확인서를 받아 본점에 보고하며, 국내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영업추진을 위해 모든 신상품 출시 및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 전 법률 & 준법감시본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b. 운영 리스크

바젤II의 운영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각 부서의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그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관련 손실을 보고받아 리스크가 발생한 업무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 또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의 관리범위는 크게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내부 프로세스와 직원, 시스템 등의 오류 또는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대표적이며, 이를 각 부서별로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합니다. 각 부문별 리스크 익스포저는 본점과 은행의 Top Management 회의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리스크관리 위원회를 구축하여 주요 안전에 대해 보고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 전산시스템 운용 리스크

만약 발생 할 수 있는 전산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복구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전산장애 발생시부터 4시간 (예전: 12시간) 이내에 복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 환경의 일일거래자료는 2차 주전산기에 실시간으로 저장되어지며 나머지 OA환경과 관련된 자료는 매일 백업되어 소산 저장되고 있습니다. OA환경의 각종 주요 서버는 백업센테에 설치되어있어 비상시 온라인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전: 장비장애투 대비 긴급설치에 관한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트레이딩정책지침

제1장 총 칙

1. 의의

트레이딩정책지침(이하 "정책지침")은 시장리스크 측정대상 포지션을 구분관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정책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시장리스크"는 금리, 환율, 주가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이 트레이딩 포지션으로부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 (2) "트레이딩 포지션"은 이자수익 보다는 가격변동 등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 무위험차익, 리스크헤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리 및 주식 포지션과 모든 외환포지션을 말한다.
- (3) "표준방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제2장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4) "내부모형"은 금융기관이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자체구축·운영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정책지침은 모든 은행계정에 대해 적용된다.

4. 관련부서 및 역할

- (1) 자금부 - 가) 원화 및 외화부분 트레이딩포지션의 운영 및 관리총괄
나) 정책지침의 개정 및 시장리스크관리 전반에 대한 총괄
- (2) 자금회계부 - 가) 트레이딩포지션과 관련된 회계처리
나) 시장리스크관리 통제 및 보고 (한도초과여부)
- (3) 재무관리책임자(Financial Controller) -가) 트레이딩정책지침을 통할 관리
- (4) 감사부 - 가) 트레이딩정책지침 운영과 관련된 감사
나) 한도초과 여부와 관련된 상시감사 및 조치사항
- (5) 준법감시부 - 가) 트레이딩정책지침 개정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

제2장 트레이딩 포지션의 구분관리

5. 트레이딩 포지션의 구분원칙

금융수단에 대한 포지션은 트레이딩 포지션(trading book)과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트레이딩 의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환포지션은 취득의도와 관계없이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제2장 3절에 규정된 모든 포지션을 시장리스크 측정대상으로 분류한다.

- (1) 단기매매 또는 주가, 금리, 환율, 일반상품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단기 매매차익 획득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 (2) 무위험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 (3) 인수·중개 및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파생상품
- (5) 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 헤지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 (6) 기타 트레이딩 포지션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포지션으로서 트레이딩 포지션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

6. 트레이딩 포지션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 및 부채 등은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간주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의해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 (2) 매매목적의 파생상품 및 이에 대한 헤지수단으로 취하는 파생상품
- (3) 기타 트레이딩포지션 구분원칙에 부합되는 자산 및 부채 등 (예: CD, RP 등)

7.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투자수단의 종류

- (1)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주식, 수익증권, 기업어음(CP) 및 채권과 유사한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전환사채
- (2) 대여유가증권
- (3) 환매수조건부 매도채권
- (4) 1)2)3)을 기초로 한 그에 따른 파생상품
- (5) 통화별 외환 포지션
- (6) 5)을 기초로 한 그에 따른 파생상품

8.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제외되는 거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포지션은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일일 공정가액평가가 불가능한 포지션
- (2)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시장중개가 일반적이지 않은 포지션
- (3) 일별시장리스크 측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포지션
- (4) 일일 공정가액평가는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매각이 제한된 포지션

9. 포지션의 재분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포지션을 목적에 맞게 재분류하여야 한다.

- (1) 트레이딩 포지션을 비트레이딩 포지션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 가.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취득하였으나 보유의도의 변경 등 비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분류할 사유가 발생한 유가증권
 - 나. 장기간 매매하지 않아 트레이딩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유가증권
 - 다. 발행자의 부도, 신용등급의 하락, 기타의 사유로 시장성을 상실하였거나 만기가 지나도 회수되지 않은 상품
- (2) 비트레이딩 포지션을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측정"에 의거 위험회피회계 중단사유가 발생한 파생상품

10. 트레이딩 포지션의 구분 및 관리를 위한 통제

트레이딩 포지션의 구분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한다

- (1) 트레이딩 포지션의 구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산 및 회계적으로 구분 운용한다
- (2) 데스크별 또는 딜러별로 트레이딩 포지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을 분리하여 운용한다.
- (3) 중도매각 채권이나 투자주식 등 비트레이딩 포지션이 트레이딩 포지션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트레이딩 포지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간 재분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한다

제 3 장 가치평가

11.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

트레이딩 포지션은 다음의 공정가액평가 기준에 따라 일별평가를 실시한다.

- (1) 채권은 다음 자료를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평가
 - 가. 관련시장의 증가,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세정보공표기관에서 발표하는 해당채권의 직전 최근 거래일의 증가

- 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의 공정가액은 평가대상채권의 미래현금흐름을 무이표채수익률 곡선의 해당기간별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
- 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원화채권)
- 라. 외화채권의 공정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무이표채수익률곡선 또는 채권발행자의 신용도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로이터, 블룸버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거래별 예시가격(Indication price) 또는 유사증권의 거래가격 (Benchmark price)

(2) 수익증권 : 증권투자신탁회사 발표 기준가격

(3) 주식: 관련시장의 증가. 다만, 평가일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증가

(4)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은 평가일 현재 관련시장의 증가.

단, 평가일 현재의 증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증가

나. 장외파생상품은 로이터, 블룸버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입수한 대응가격 또는 가격결정모형(세부내용 기술) 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격

(5) 적용환율등 기타 공정가액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은행회계처리준칙”,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 및 <별표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등에서 정하는 내용을 적용

제 4 장 기타

12. 연결기준 시장리스크 측정방법

- (1)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은 은행계정과 신탁계정 시장리스크의 단순합(aggregation)으로 한다.
- (2) 내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은 은행계정과 신탁계정 시장리스크의 단순합(aggregation)으로 한다.

13. 제정 및 개정의 승인권자

- (1) 이 정책지침은 재무관리책임자(Financial Controller)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2) 이 정책지침은 금융감독원장과 사전협의 후 재무관리책임자(Financial Controller)의 승인을 받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정 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단순 자구 수정, 외규에 의한 수정 등 단순한 보완차원의 개정시에는 재무관리책임자(Financial Controller)에 대한 보고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로 대체한다.

14. 내부감사

- (1) 이 정책지침의 운영에 대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 (2) 내부감사 대상에는 이 정책지침 관리를 통할하는 부서 및 트레이딩부서를 모두 포함한다.
- (3) 내부감사시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점검되어야 한다.
 - 가. 이 정책지침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제반 절차의 적정성 여부
 - 나. 포지션간 구분원칙의 준수, 구분원칙의 일관성 유지 여부, 재분류의 적정성
 - 다. 중도매각채권 운용의 적정성

15.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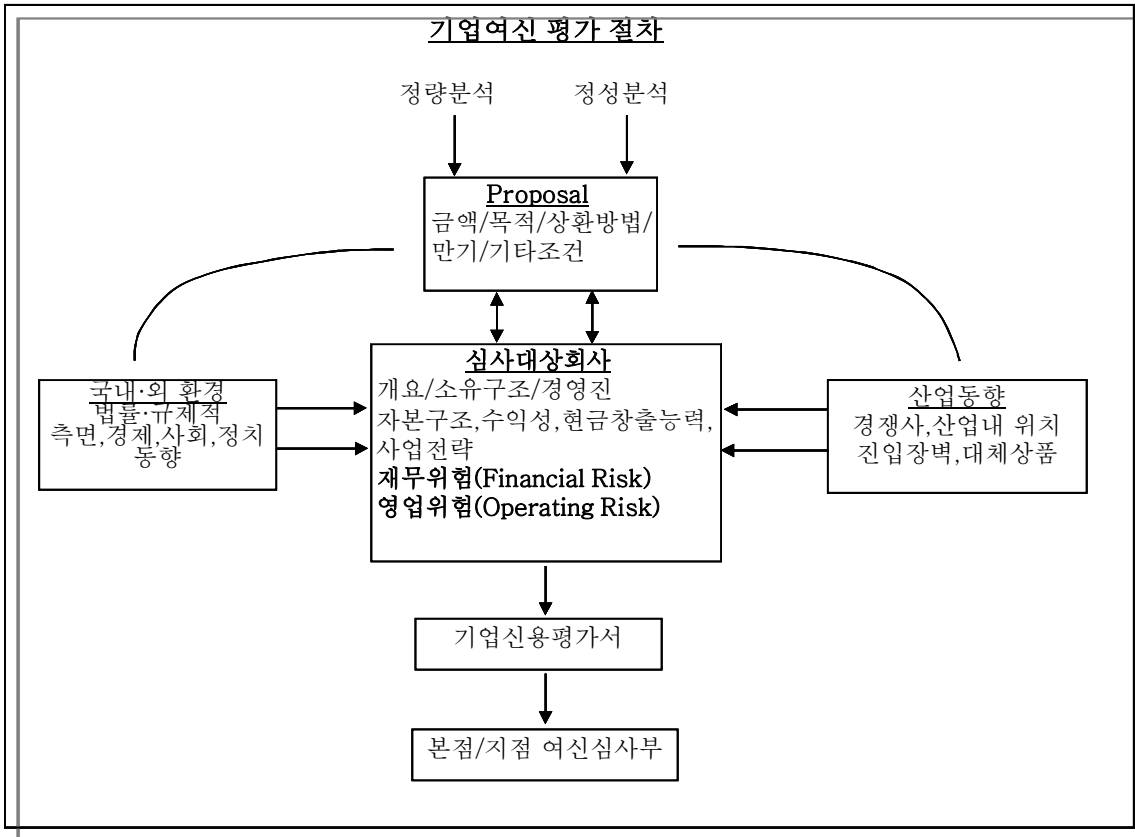
정책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1회 경영공시자료에 공시한다.

16. 시행일

이 정책지침은 2011. 03. 21. 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여신심사 절차 및 기준(HSBC)



주요 심사기준

여신의 종류와 거래조건

- 거래형태(잔액, 한도, 제안금액)
- 기간
- 조건: 금리 및 마진
- 상환스케줄
- 담보유무
- 여신의 사용용도
- 여신의 수익성
- 여신의 내/외부 규정 적합성

재무분석

- 매출, 수익성
- 현금흐름(영업활동, 투자 및 재무활동)
- 운전자금분석
- 유동성
- 자본구조
- 우발채무
- 외환리스크

영업분석

- 업체개요 및 연혁
- 소유권구조
- 경영진현황
- 사업전략
- 제품(상품)의 경쟁력
- 노사관계
- 향후 투자계획 및 적정성

산업분석

- 시장규모 및 산업내 위치
- 산업의 숙성도
- 진입 장벽

24. 상품 이용시 유의사항

1. 예금 상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예금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모든 예금 거래는 예금 가입시 신고한 인감 혹은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모든 거래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통장(무통장 상품일 경우 해당 사항 없음)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 거래시 영업점 창구에 비치된 예금거래 기본 약관 및 거래하시는 상품의 약관을 반드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 특히 주가지수 연동 예금과 같이 파생 상품에 연계되어 시장 조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변동 금리 상품의 경우 반드시 상품의 내용과 약정 사항을 확인 하시고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 거래 인감을 분실하셨을 때는 즉시 가까운 영업점 또는 HSBC 콜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1770)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2. 투자 상품

- 이 상품은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뮤추얼 펀드를 위탁 판매하는 것으로, 금리 변동 및 운영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 및 뮤추얼펀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품에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신탁설명서를 교부받아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 또는 뮤추얼펀드를 해지(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지(환매)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매금 지급일 및 기준가 적용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국내외의 공휴일 혹은 증시휴장 등으로 인해 환매금 지급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내에 환매하시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품이 있으니 상품 가입시 반드시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달러, 일본엔, 유로화 등을 기준통화로 하는 해외펀드에 투자하실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상품

- 대출거래는 반드시 실명에 의해야 합니다.
- 대출거래 약정체결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해당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등을 열람/교부받아 대출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출신청시 당행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액은 신청금액에 불구하고 본인의 수입 등으로 무리없이 변제가 가능한 범위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으신 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만기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25. 수수료

가. 수신[예금]수수료(내국환 및 전자금융수수료 포함)

(1) 인터넷 뱅킹 수수료

(단위:원)

	프리미어 고객	일반 고객
당행/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면제
해외송금/송금수표	7,500	7,500
해외자기계좌 송금	면제	7,500

* 프리미엄 고객의 해외자기계좌송금 수수료 면제는 고객이 보유한 국내외 HSBC 프리미엄 계좌간의 송금에만 적용됩니다.

(2) ATM 이용 수수료

(단위:원)

		프리미어 고객	일반 고객
현금카드 및 국제현금카드 신규/추가 발급 수수료		건당 2,000	
국내이용	당행인출	면제	면제
	타행인출	면제	건당 1,000
	당행이체	면제	
	타행 이체	1백만원 이하	1,500
5백만원 이하		2,000	
5백만원 초과		3,000	
해외이용*	인출	당행 ATM 이용시	면제
		제휴 ATM 이용시 (PLUS표기)	3,000
		잔액조회	면제

* 일일한도 현금인출 5백만원 / 계좌이체 1천만원

* ATM 해외이용은 국제현금카드 이용시에 한하며, 해외에서 계좌 이체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폰뱅킹 자금이체 수수료

		프리미어 고객	일반 고객
당행	금액에 관계 없이	면제	
타행 (상담원을 통한 이체)	1백만원 이하	면제	2,000
	1천만원 이하		3,000
	1천만원 초과		4,000
타행 (ARS를 통한 이체)			500

* 이체한도는 폰뱅킹 가입시에 총한도 일일이체한도 1억원, 일회 이체한도 5천만원 내에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폰뱅킹 고객께서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체한도 감액 신청이 가능하나, 이체한도 증액은 영업점에서 서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기타

	프리미어 고객	일반 고객
e-자유예금 Plus 창구 수수료	면제	2,000
e-자유예금 Plus 월평균 300만원 미만 유지시 계좌 유지 수수료	면제	2,000
다이렉트 저축예금 창구거래 수수료	건당 2,000원	
다이렉트 ATM 이용 수수료 (타행 ATM을 통한 출금 및 이체 거래시)	건당 1,000원	

* 프리미엄 고객 자격 요건

프리미어는 고객우대제도의 일환으로, 은행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HSBC은행에 예치 또는 투자한 금액 (이하 예치 금액) 이 1억원 이상인 고객중, 프리미엄 서비스 고객동의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만 가능

* 기타 문의 사항은 고객 서비스 센터 1588-177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수수료는 2012년 2월 29일 기준입니다.

나. 여신[대출]수수료

(단위:원)

종류		프리미어 고객	일반고객
채무인수 수수료		30,000 (건당)	
조건변경 수수료		30,000 (건당)	
중도상환 수수료		상환원금×중도상환 수수료율 (잔존일수 반영)	
대출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3,000 (추가시 1,000)
근저당권설정비용	국민주택채권(할인)	할인율에 따라 차등적용	
주택담보한도대출	한도해지수수료	해지한도 × 한도해지수수료율	

* 상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수수료는 2012년 2월 29일 기준입니다.

다. 외환수수료

(단위:원)

		프리미어 고객	일반 고객
Outward	전신환송금(5천불이하)	15,000	30,000
	전신환송금 (5천~1만불)	10,000	20,000
	전신환송금 (1만불 초과)	5,000	10,000
	외환송금수수료발행	5,000	10,000
Inward	전신환송금	5,000 or USD 5	10,000 or USD 10
외화수표매입	일반 외화수표 (추심 후 매입)	10,000	20,000
	HSBC 외화송금수표	10,000	20,000
	HSBC 여행자수표	추심료 없음	
	해외취급수수료	발생시	
현찰수수료 *	미화	1.0%	2.0%
	기타통화	1.5%	3.0%
대체료	일반	면제	0.1% (최소 USD 10)
	개인의 Inward 전신환송금	면제	USD 6.5
	여행자수표 (외화계좌 인출시)	면제	0.7%
여행자수표 발행수수료		0.55%	
부도의외화수표		USD 30 + 해외 취급 수수료	
글로벌 고객 서비스 (Witness Service)		면제	30,000
Emergency Encashment **		면제	20,000 or USD 20

* 현찰수수료는 외환현찰 입금시 징수됩니다. 단, 미화 (USD) 현찰입금 경우에만 현찰 수수료는 면제가 되며, 입금한 후 7일 이내에 출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 위에서 정한 현찰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소지하신 외화현찰로 외화송금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도 위에서 정한 현찰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Emergency Encashment 서비스는 해외 HSBC 고객이 국내 지점을 방문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국내 고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기타수수료

(단위:원)

		프리미어 고객	일반 고객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2,000 (추가시 500)
통장 / 증서 재발행 수수료			2,000
폰뱅킹,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재발급 수수료			2,000
일회용 보안번호 생성기 재발급 수수료			15,000
제사고 신고처리 수수료 (장당)			1,000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정액		50
	비정액		300
자기앞수표 부도처리 수수료			5,000 (장당)
자기앞수표 자금화	정액		1,000 (장당)
국내 자금이체 - 당행이체			면제
국내 자금이체 - 타행 이체	1백만원 이하		2,000
	1천만원 이하		3,000
	1천만원 초과		4,000
은행 조회서 발급 수수료			30,000 (국내발송) / 70,000 (해외발송)

* 대여금고 서비스는 프리미어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 예금관련 제증명 발급을 폰뱅킹으로 신청하실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6. 주요용어해설

1) 연결대상자회사

은행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를 연결대상자회사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봅니다.

- (1)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2)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3)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3)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2) 비연결대상자회사

은행의 지분율이 15% 초과하면서 연결대상이 아닌 다른 회사를 비연결대상자회사라고 합니다.

3) 보통주배당률

배당률은 납입자본금에 대한 보통주배당누계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text{보통주배당률} = \frac{\text{당해연도 결산후 보통주 배당누계액}}{\text{당해연도말 보통주 해당 납입자본금}} * 100$$

4) 보통주당배당액

주당배당액은 당해연도 결산후 보통주1주당 배당누계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text{보통주 주당배당액} = \frac{\text{당해연도 결산후 보통주 배당누계액}}{\text{당해연도말 보통주 주식수}}$$

5)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세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누계액의 비율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text{배당성향} = \frac{\text{당해연도 결산후 배당누계액}}{\text{당해연도 세후 당기순이익}} * 100$$

(세후 당기순이익은 연결전 은행계정 세후 당기순이익을 말함)

6) 총당금적립전이익

총당금적립전이익은 총수익에서 제경비 등을 차감한 이익으로서 은행의 영업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text{총당금적립전이익} = \text{당기순이익} + \text{법인세비용} - \text{제충당금환입액} + \text{제충당금전입액} (\text{대손상각비,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퇴직급여, 기타충당금전입액, 대손보전기금}) + \text{지도사업전출} \\ \text{*대손보전기금, 지도사업전출은 농·수협 해당}$$

7) 특별유보금과 채권평가충당금

- (1) 특별유보금 : 특별유보금은 불특정금전신탁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계정입니다.
- (2) 채권평가충당금 : 채권평가충당금은 불특정금전신탁을 대출금 등으로 운용할 때에 대출금 등의 대손에 의한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계정입니다.

8) 단기손익인식증권

단기매매증권과 단기손익인식지정 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최초 취득시점에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손익인식지정 증권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경우
- (2)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이사회,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할 경우
- (3) 복합계약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분리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합계약 전체를 단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9)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 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10)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유가증권이거나 단기손익인식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11)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은 은행의 총여신 중 연체여신, 이자미계상여신(부도업체 등에 대한여신, 채무상환능력 약화여신, 채권제조정여신)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총여신 : 대출금(원화, 외화, 역외외화, 신탁계정 대출금 포함) + 내국수입유산스
+ 지급보증대지급금 + 확정지급보증 + 신용카드채권 + 직불카드채권 + 여신성가지급금
+ 매입외환(내국신용자어음매입 및 관련 미수금 포함) + 사모사채 + 기업어음
+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 금융리스채권 + 금융리스선급금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분류단계	정의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요주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고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무수의 여신산정기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2)

대상	산정기준	
연체여신	원리금이 3월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환 여신	
이자미계상여신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최종부도업체, 파산·청산절차 진행중인 업체, 폐업중인 업체, 법정관리·화의절차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으로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환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여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회수의문거래처)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으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환 여신
	채권재조정여신	① 채권재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신(이자를 원가,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여신) ② 3월이상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원리금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신 ③ 원리금의 상황이 유예되거나 기준금리 이하로 재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원리금 상황이 불확실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

12) 고정이하분류여신

고정이하분류여신은 은행의 총여신 중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상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여신으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 (1) 고정 : 총여신중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액
- (2) 회수의문 : 총여신중 손실발생이 예상되거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3) 추정손실 : 총여신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은혜이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13) 파생상품거래

통화,채권,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근거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이로 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및 기타 이를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 1) 장내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 2) 장외거래는 장내거래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 3) 헷지거래는 기초자산의 손실을 감소 혹은 제거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 4) 트레이딩거래는 거래목적이 헷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거래입니다.
- 5) 잠재적신용익스포저는 리스크요인별, 잔존만기별로 신용환산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14)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BIS 금융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산의 신용,시장리스크에 따라 자기자본보유를 의무화하는 "자기자본 측정과 적정자기자본 수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의 하나로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재무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은 8% 이상입니다.

15) 원화유동성비율

원화유동성비율은 단기조달자금에 대한 단기자금운용을 표시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은 100%이상입니다.

16) 업무용유형자산 비율

업무용유형자산 비율은 은행이 점포개설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투자액, 임차보증금 등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기자본에 대한 동 투자액의 비율로 표시됩니다.

17) 예대금리차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자금부문의익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원화대출금수익률에서 원화예수금비용률을 차감하여 표시되며, 대출운용이 적정수익력 및 저비용성자금(Low Cost Funding)조달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18) 명목순이자마진

(☞ 업무보고서 순이자마진 B2510참조)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이자수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과의 차이를 말하며 매결산기말에 금융감독원앞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상의 순이자마진 산출방식에 의거 산출하여 기재한다.

○ 명목순이자마진(NIM)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이자수익자산

19) 신탁부문의익

은행의 손익발생 원천에서 신탁부문의익은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신탁부문의익 = 신탁보수 + 중도해지수수료 - 신탁보전금

20) 순외환익스포저

순외환익스포저는 외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투기 등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설정된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순외환익스포저의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 대비 50% 이내입니다.

21) 지급보증

은행이 거래자의 의뢰에 따라 동 거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확정지급보증 : 용자담보지급보증, 사채발행지급보증, 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된 수입관계지급보증, 해외현지차입 및 입찰 보증, 계약이행 보증과 같이 은행이 행한 보증 행위중 일정한 이행조건이 구비된 지급보증을 확정지급보증이라고 합니다.

(2) 미확정지급보증 : 화물선취 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수입관계 지급보증 등과 같이 은행이 행한 보증행위중 이행요건이 구비되기전의 지급보증으로 이 지급보증은 이행요건이 구비되는 시점에서 확정지급보증으로 전환되거나 보증의퇴인의 주채무이행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22) 대손준비금

은행은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하고 있으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3) 신용등급

신용등급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것이며, Moody's, S&P, Fitch 를 국제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은 기간에 따라 장/단기, 통화에 따라 자국통화표시/외화표시, 종류에 따라 채권(부채)/예치/발행 관련 신용등급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장/단기에서 단기등급은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채무 상환능력 및 상환불능위험을 나타내며, 국내은행의 경우 개별은행의 사정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평가사가 1~2개에 한정될 수도 있으나, 3대 신용평가사는 국내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대부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 신용평가사별 신용등급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Moody's	S&P	Fitch
장기	투자적격등급	Aaa ~ Baa3 (1등급)	AAA ~ BBB- (10등급)	AAA ~ BBB- (10등급)
	투기등급	Ba1 ~ C (11등급)	BB+ ~ SD 및 D (12등급)	BB+ ~ D (14등급)
단기	투자적격등급	P-1 ~ P-3 (2등급)	A-1+ ~ A-3 (4등급)	F1+ ~ F3 (4등급)
	투기등급	NP(1등급)	B ~ SD 및 D (6등급)	B ~ D (3등급)

○ 장기신용등급

구분	Moody's	S&P	Fitch	신용등급내용	
투자 적격 등급	Aaa	AAA	AAA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높음(Best)	
	Aa1	AA+	AA+	Aaa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High Quality)	
	Aa2	AA	AA		
	Aa3	AA-	AA-		
	A1	A+	A+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Upper-Medium Grade)	
	A2	A	A		
	A3	A-	A-		
Baa1	Baa1	BBB+	BBB+	현재 원리금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함 (Medium Grade)	
	Baa2	BBB	BBB		
	Baa3	BBB-	BBB-		
투기 등급	Ba1	BB+	BB+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 요소가 있음 (Partially Speculative)	
		Ba2	BB		BB
		Ba3	BB-		BB-
	B1	B+	B+	원리금지급의 안정성이 낮음 (Speculative)	
		B2	B		B
		B3	B-		B-
	Caa1	CCC+	CCC+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음 (Maybe in Default)	
		Caa2	CCC		CCC
		Caa3	CCC-		CCC-
	Ca	CC	CC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큼(Often in Default)	
C		C	최저등급(Extremely Poor)		
	SD 및 D	DDD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Bankruptcy)		
		DD			
		D			

○ 단기신용등급

구분	Moody's	S&P	Fitch	신용등급내용
투자 적격 등급	P-1 (Prime-1)	A-1+	F1+	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
	P-2 (Prime-2)	A-1	F1	Prime-1 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단, 경제상황 및 영업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P-3 (Prime-3)	A-2	F2	현재의 단기 상환능력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투기 등급	NP (Not Prime)	B		단기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투기 등급
		B-1	B	
		B-2		
		B-3		
		C	C	단기 채무 지급 불능 가능성
		SD 및 D	D	부도등급 혹은 부도가능성

24) 신용 리스크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25) 운영 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26) 시장리스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로서 "일반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로 구분됩니다. "일반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주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 등 시장가격의 일반적 수준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 리스크를 말합니다. "개별리스크"라 함은 일반적인 시장가격의 변화외에 채권 및 주식발행자 등의 신용리스크의 변동 등에 의한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합니다.

27) 금리리스크

금리가 금융기관의 금리민감 자산, 부채 등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손실위험으로서 금리 EaR (Earning at Risk)과 금리 VaR(Value at Risk) 등으로 측정됩니다.

28)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전문가(위탁회사)들이 전문지식이나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고객(수익자)들을 대신하여 주식,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금을 고객에게 다시 분배해 주는 투자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수익증권이란 : 증권투자신탁 계약에 따라 원본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을 받을 권리(수익권)가 표시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 뮤추얼펀드란 : 회사형 투자신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한 후 이 자금을 전문적인 자산운용 회사에 운용을 맡겨 그 이익금을 투자자(즉 주주)에게 배당으로 배분하는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29) 방카슈랑스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입니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어온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9월에 도입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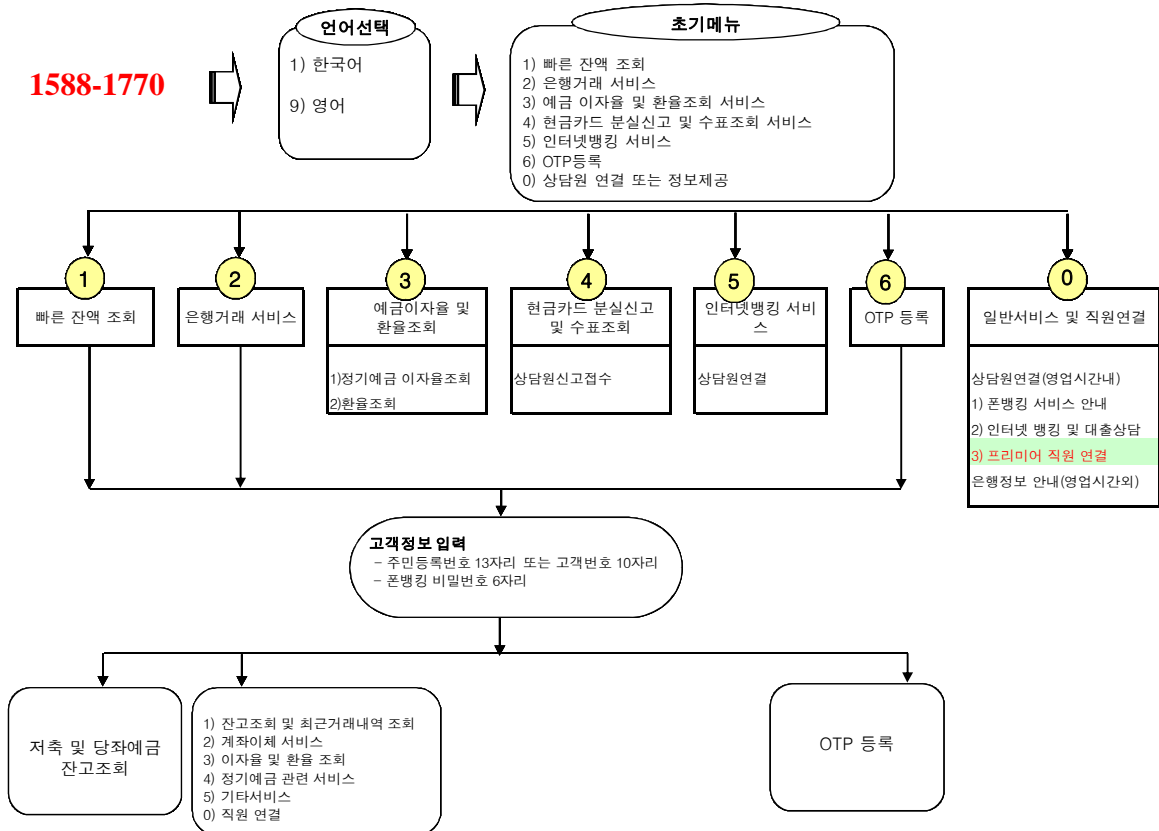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 대출, 투자상품 및 보험에 이르는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보험사는 판매채널의 개선으로 인해 보험료 인하와 상품의 용이성을 통해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폰뱅킹 서비스

서비스 이용방법

- * 1단계 일반고객:1588-1770 연결(해외이용시 82-2-6955-1153)
- * 2단계 사용언어 선택 (①한국어 ⑨영어)
- * 3단계 서비스코드 입력
(아래의 서비스코드를 참조하세요.)
- * 4단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폰뱅킹번호 10자리 + #입력
- * 5단계 폰뱅킹비밀번호 6자리 입력

폰뱅킹 서비스 안내 (1588-1770)



폰뱅킹 이체 서비스

고객님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타행이체의 경우 상담원이 수취인을 확인후 처리하거나 ARS 를 이용하여 직접 이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 * 폰뱅킹 비밀번호는 ARS 안내에 따라 언제라도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하신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 * ARS를 통한 1일 최대 이체한도 1억원(1회 이체최대한도 5천만원), 상담원을 통한 1일 최대 이체한도 1억원 (1회 이체최대한도 5천만원)이므로 1일 총 이체한도는 2억원입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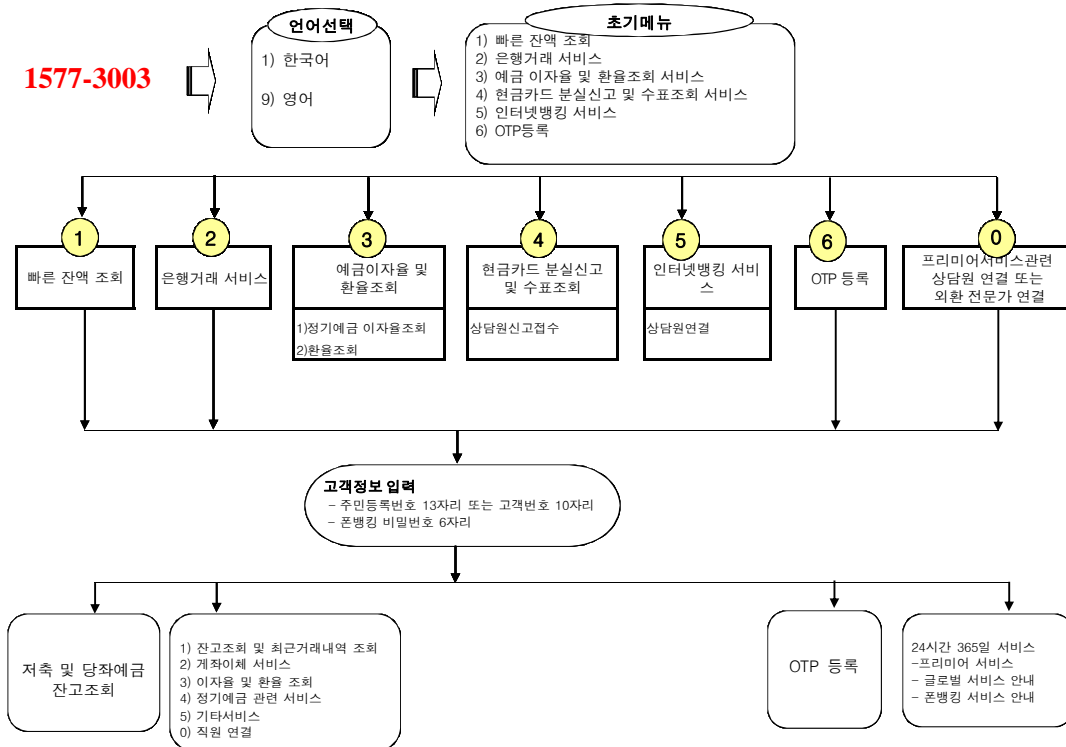
서비스종류		평일	토/일/요일
이체	당행이체	직원을 통한이체	09:00~17:30 이체불가
		ARS 이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타행이체	직원을 통한이체	09:00~17:30 이체불가
		ARS 이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조회서비스 (ARS), 분실신고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 직원상담		09:00~17:30	-

폰뱅킹 프리미어 서비스

서비스 이용방법

- * 1단계 *프리미어* 고객:1577-3003 연결(해외이용시 82-2-6955-1155)
- * 2단계 사용언어 선택 (①한국어 ②영어)
- * 3단계 서비스코드 입력
(아래의 서비스코드를 참조하세요.)
- * 4단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폰뱅킹번호 10자리 + #입력
- * 5단계 폰뱅킹비밀번호 6자리 입력

폰뱅킹 서비스 안내 (1577-3003)



폰뱅킹 이체 서비스

고객님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타행이체의 경우 상담원이 수취인을 확인후 처리하거나 ARS 를 이용하여 직접 이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 * 폰뱅킹 비밀번호는 ARS 안내에 따라 언제라도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하신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 * ARS를 통한 1일 최대 이체한도 1억원(1회 이체최대한도 5천만원), 상담원을 통한 1일 최대 이체한도 1억원 (1회 이체최대한도 5천만원)이므로 1일 총 이체한도는 2억원입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종류		평일	토/일요일
이체	당행이체	직원을 통한이체	09:00~17:30 이체불가
		ARS 이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타행이체	직원을 통한이체	09:00~17:30 이체불가
		ARS 이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조회서비스, 분실신고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 직원상담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